##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439

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 구자근 · 인요한 · 김석기

박덕흠 · 김선교 · 이만희

정점식 · 최수진 · 김도읍

박준태 · 신동욱 · 박형수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,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는 등 현행 조항의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2제2 항).

법률 제 호

##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 중 "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"을 "입장권등을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입장권등의 부정판매	제4조의2(입장권등의 부정판매
금지 등) ① (생 략)	금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누구든지 <u>「정보통신망 이</u>	② <u>입장권등을</u>
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	
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	
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	
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	
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	
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	